

법원 공보

2025. 06. 15.
제 1714 호



법원행정처

목차

• 규칙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부개정규칙		837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841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847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51
• 신법령 목록			858
• 인사			865

■ 규칙

◎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11호 2025. 5. 30. 공포)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 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 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아동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 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입양허가에 대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 한다.

제2장 입양허가 청구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약물·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심리검사서, 신용조회서 및 재정보증서,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자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6.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7.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을 받았거나 본국법에 따라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8.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과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9조(심판의 고지 등) ①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0조(즉시항고) 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시양육결정

제11조(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즉시항고)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장 입양취소의 소

제14조(관할)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5조(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3212호 2025. 5. 30.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① 가정법원은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및 입양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전환 재판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및 입양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전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아동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이 규칙에 따른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 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본국법에 의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 라.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 마.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 사.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 아.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 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서류
 4. 법 제8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
 4. 법 제8조에서 정한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5.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약물·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등)
 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자료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자료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9조(심판의 고지 등) ①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0조(즉시항고) 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절차와 심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국내로의 입양

제1절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판

제12조(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① 전환 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로부터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기존의 친자관계 종료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제3조에 따라 친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제1항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전환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협약 체결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서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서류
2.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
3.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양부모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제12조에 따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친양자가 될 아동 및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할 때에는 양부모,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16조(심판의 고지 등) ① 전환 재판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친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보를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보상의 청구인과 친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7조(즉시항고) ① 전환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그 친생부모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환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절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

제18조(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청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권한 있는 당국의 입양 승인 등 적법한 입양에 관한 서류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4.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 나.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 다.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 라.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 바.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 사.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제19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3. 법 제21조에 따라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21조(심판의 고지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보를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보상의 청구인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즉시항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절 법 제23조에 따른 재판

제23조(준용규정) 법 제23조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13호 2025. 5. 30. 공포)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소·변경 신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장·변경·취소 청구 또는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2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취소·변경 및 연장을 할 수 있다.

제28조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을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취소·변경의”를 “취소·변경·연장의”로, “취소·변경할”을 “취소·변경·연장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변경함”을 “취소·변경·연장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변경”을 “취소·변경·연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본문 중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전단 중 “신청은”을 “청구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청서”를 “신청서 및 청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에”를 “신청 및 청구에”로, “신청인”을 “신청인, 청구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아동등·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⑤(생략)

제70조(청구의 방식) ①(생략)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 7. (생략)

③·④(생략)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생략)

②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③ ~ ⑦(생략)

개정안

② ----- 취소·변경·연장 -----

-----.

③ ----- 취소·변경·연장 -----
-----.

④·⑤(현행과 같음)

제70조(청구의 방식) ①(현행과 같음)

② -----

-----.

1. -----

--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2. ~ 7. (현행과 같음)

③·④(현행과 같음)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

③ ~ ⑦(현행과 같음)

현행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 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⑥(생략)

개정안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① -----

----- 청구는
-----, ----- 신청서 및 청구서-----

-----.

②·③(현행과 같음)

④ ----- 신청 및 청구에 ----- 신청인, 청구인 -----.

⑤·⑥(현행과 같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14호 2025. 5. 30. 공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소송홈페이지”란”을 ““전자소송포털”이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6항, 제11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41조제2항 중 “전자소송홈페이지”를 각각 “전자소송포털”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법원규칙 제3164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조제4항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 법 적용일 당시”를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로 한다.

부칙 제7조의 제목 중 “우편송달”을 “우편송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당사자가 제출하는 공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부분을 송달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 4. (생 략)

제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8조(전자서명 등) ① ~ ⑤ (생략)

⑥ 제1항의 공고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 · 제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전자소송포털”이란 -----

-----.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자등록) ① -----

-----전자소송포털-----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전자서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전자소송포털-----
-----.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 · 제출) ① -----

----- 전자소송포털-----

현행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을 직접 입력하거나 미리 작성·변환한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12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다음부터 “멀티미디어 자료”라 한다)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제28조에 따라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생략)

개정안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① -----

----- 전자소송포털-----.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

-----, 전자소송포털-----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① -----

----- 전자소송포털-----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현행과 같음)

현행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 서류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① 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③(생략)

제2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각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④(생략)

제41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①(생략)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② -----
---전자소송포털-----

-----.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① -----

----- 전자소송포털 -----
-----.

②·③(현행과 같음)

제2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

--- 전자소송포털 -----

-----.

②~④(현행과 같음)

제41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

----- 전자소송포털 -----.

현행

③(생략)

대법원규칙 제3164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 ③(생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 법 적용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서, 공판조서 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출력 문서의 전자적 연계를 이용한 우편 송달) 부칙 제2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출력하는 재판서·조서의 등본, 초본 등 법원 작성 문서를 이 규칙 제27조제4항의 방식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신설>

개정안

③(현행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164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

제7조(-----
우편송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당사자가 제출하는 공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부분을 송달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별표 3]

절차별 적용시기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25. 10. 10.	「형사소송법」	형사공판사건, 약식절차사건, 영장 청구 사건, 형사신청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의 모든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장의 모든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모든 사건
	「소년법」	모든 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장의 모든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건,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 사건,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사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025. 10. 1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모든 사건

[별표 5]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적용일	집행대상인 영장등	방법
2025. 10. 10.	제36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발부된 모든 영장등	법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당해 전자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하는 방법
2026. 9. 28.	제36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발부된 모든 영장등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전자영장을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
2026. 9. 28.	제36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형태로 송신 또는 수신될 수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영장등	법 제17조제1항, 이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장등을 전송하여 집행하는 방법

■ 신법령 목록 (2025. 5. 16. ~ 2025. 5. 31.)

법률

법률제2095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0997	2025. 05. 20.	4
법률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20957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1002	2025. 05. 27.	4
법률제20958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
법률제20959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20960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096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20962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2096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20964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20965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20966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209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2096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2096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21002	2025. 05. 27.	20
법률제2097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21
법률제20971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22
법률제20972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24
법률제2097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26
법률제20974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8
법률제2097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20976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	"	30
법률제20977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31
법률제2097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20979호	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20980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46
법률제2098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1
법률제2098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52
법률제2098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2098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54
법률제2098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55

조약

조약제2610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20998	2025. 05. 21.	4
----------	--	-------	---------------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504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997	2025. 05. 20.	7
대통령령제3550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550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550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3550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3550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5
대통령령제3551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35511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3551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5513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35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355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 개정령	"	"	34
대통령령제35516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3551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35518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997	2025. 05. 20.	37
대통령령제35519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3552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35521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3552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3552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
대통령령제35524호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35525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3552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
대통령령제35527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7
대통령령제3552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35529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35530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35531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35532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4
대통령령제3553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5
대통령령제3553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35535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997	2025. 05. 20.	73
대통령령제3553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002	2025. 05. 27.	57
대통령령제35537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35538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1
대통령령제3553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2
대통령령제3554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5
대통령령제35541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35542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7
대통령령제35543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8
대통령령제3554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1
대통령령제35545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2
대통령령제3554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4
대통령령제35547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6
대통령령제35548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8
대통령령제35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9
대통령령제3555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7
대통령령제3555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8

총리령

총리령제203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20997	2025. 05. 20.	76
총리령제203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98	2025. 05. 21.	15

부령

기획재정부령제1126호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 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995	2025. 05. 16.	4
고용노동부령제44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20997	2025. 05. 20.	78
국방부령제117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5
국토교통부령제149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87
문화체육관광부령제60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8
여성가족부령제21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9
해양수산부령제73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90
행정안전부령제56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일부개정령	"	"	94
기획재정부령제112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98	2025. 05. 21.	16
법무부령제109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

환경부령제1175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00	2025. 05. 23.	3
환경부령제117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국가보훈부령제49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21001	2025. 05. 26.	4
해양수산부령제734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법무부령제1096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02	2025. 05. 27.	99
행정안전부령제56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0
해양수산부령제73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03	2025. 05. 28.	4
환경부령제117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04	2025. 05. 29.	3
고용노동부령제44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05	2025. 05. 30.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5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국토교통부령제149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18
국토교통부령제149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0
문화체육관광부령제60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법무부령제109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2
행정안전부령제562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2
해양수산부령제73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21005 (별권2)	2025. 05. 30.	2

인사

》 인사발령 법 제85호 | 2025. 5. 8.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2025년도 해외사법기관과 함께 하는 온라인 법관연수 I (2025. 5. 9.) 피교육을 명함
	"	김성수	"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염기창	2025년도 해외사법기관과 함께 하는 온라인 법관연수 I (2025. 5. 9.) 피교육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도요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순영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종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열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권경선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손광진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순욱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무신	2025년도 해외사법기관과 함께 하는 온라인 법관연수 I (2025. 5. 9.) 피교육을 명함
	"	김진하	"
	"	위광하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다은	2025년도 해외사법기관과 함께 하는 온라인 법관연수 I (2025. 5. 9.) 피교육을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장지용	"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아	"

라.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강동원	2025년도 해외사법기관과 함께 하는 온라인 법관연수 I (2025. 5. 9.) 피교육을 명함
"	박주연	"
"	박보미	"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지은	2025년도 해외사법기관과 함께 하는 온라인 법관연수 I (2025. 5. 9.) 피교육을 명함
"	김은영	"
"	김지연	"
"	박계현	"
"	박노을	"
"	최승훈	"
서울가정법원 판사	노민식	"
서울행정법원 판사	유영화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은혜	"
"	윤 정	"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철순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태호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

끝.

》 인사발령 법 제86호 | 2025. 5. 12.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	조미연	2025. 5. 15.부터 2025. 5.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장석조	2025. 5. 15.부터 2025. 5.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창국	2025. 5. 15.부터 2025. 5.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	한숙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원용일	"
	"	이영남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아	"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수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진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부동식	"
	"	이지영	"
	"	이현오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세현	"
	"	박민우	"
	"	박현경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용찬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나경선	2025. 5. 15.부터 2025. 5.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	박병찬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상률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영애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권기백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조현욱	“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권창환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인영	“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유석동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노연주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이정우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	“

라.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슬기	2025. 5. 15.부터 2025. 5.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	원종찬	“
“	윤권원	“
“	조 인	“

마.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미	2025. 5. 15.부터 2025. 5.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	-----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동석	2025. 5. 15.부터 2025. 5.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	김은영	"
	"	이민지	"
	"	정선희 (鄭先熙)	"
	"	정순열	"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현우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덕수	"
	"	김동욱	"
	"	김동현	"
	"	김소영	"
	"	남승정	"
	"	박주영	"
	"	박혜란	"
	"	석윤민	"
	"	여규호	"
	"	여인지	"
	"	원용준	"
	"	유정화	"
	"	이유진	"
	"	이형원	"
	"	정승진	"
	"	조성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설동윤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오정훈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현지	2025. 5. 15.부터 2025. 5.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소혜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문지현	"
	"	한경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해마루	"
	"	서민아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	하다희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지원	"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 영	"
	수원회생법원 판사	강은지	"
	"	김동민	"
	"	김준환	"
	"	남관모	"
	"	신동욱	"
	"	이원식	"
	"	정수미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광일	"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병용	"
	"	이정준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이은상	"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명수	"
	"	김하림	"
	"	정현기	"
	대구지방법원 판사	육영아	"
	"	현영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자윤	"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재원	"
	"	조현우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울산지방법원 판사	박세정	2025. 5. 15.부터 2025. 5. 16.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도산실무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진경	"
	"	박준영	"
	"	정강은	"
	"	최태진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경중	"
	"	정수현	"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정언	"
	"	정유성	"
	"	정인수	"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승현	" 끝.

》 인사발령 법 제87호 | 2025. 5. 15.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승은	2025. 5. 19.부터 2025. 5. 2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피교육을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혜원	2025. 5. 19.부터 2025. 5. 2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피교육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예영	2025. 5. 19.부터 2025. 5. 2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피교육을 명함
	"	임수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경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태혁	"
	"	정옥도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진혜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우라옥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
	"	김용희	"
	"	송병훈	"
	"	이재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나경선	"
	"	윤지숙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윤주	"
	"	이효두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채정선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남효정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경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오승이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성호	"
	"	조정현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연진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전아람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병민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김희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가현	2025. 5. 19.부터 2025. 5. 2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피교육을 명함
	"	정승연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선옥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진하	2025. 5. 19.부터 2025. 5. 2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피교육을 명함
	"	안승훈	"
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지웅	2025. 5. 19.부터 2025. 5. 2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피교육을 명함
마.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여한울	2025. 5. 19.부터 2025. 5. 2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피교육을 명함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지은	2025. 5. 19.부터 2025. 5. 2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피교육을 명함
	"	김아름	"
	"	김지연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곽신재	"
	"	안홍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가영	2025. 5. 19.부터 2025. 5. 2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국제인권법과 법관) 피교육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소혜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류영재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유영	"
	"	홍순건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은솔	"
	"	박민지	"
	"	전화정	"
	"	정희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필복	"
	대구지방법원 판사	윤규원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부성	"
	"	김수빈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강보라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
	"	김은지	"

끝.

》 인사발령 법 제88호 | 2025. 5.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수정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두	2025. 5. 23.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	염기창	"
	"	이규영	"
	"	최성수	2025. 5. 22.부터 2025. 5.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덕	2025. 5. 23.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우찬	"
	"	김수경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석	2025. 5. 23.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수경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지은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상제	"
	"	허정룡	2025. 5. 23.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세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영호	"
	"	설승원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일수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	이현정	2025. 5. 23.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	홍은아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이경희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김진선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강진명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빈태욱	2025. 5. 23.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	윤중렬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남효정	2025. 5. 23.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권기백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정현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윤 민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장인혜	2025. 5. 23.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정승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윤준석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욱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영복	"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선아	"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소망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	방일수	2025. 5. 23.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민혁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	한승진	"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미영	2025. 5. 23.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창수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	안홍준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권혁재	2025. 5. 23.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인천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2025. 5. 22.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	임영실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송인석	2025. 5. 23.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피교육을 명함
	부산가정법원 판사	최정원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권예슬	"

》 인사발령 법 제89호 | 2025. 5.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2025. 5. 26.부터 2025. 5. 27.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성폭력 재판의 최신 쟁점) 피교육을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희석	2025. 5. 26.부터 2025. 5. 27.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성폭력 재판의 최신 쟁점) 피교육을 명함
	"	소병진	"
	"	이현경	"
	"	임혜원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규훈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2025. 5. 26.부터 2025. 5. 27.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성폭력 재판의 최신 쟁점) 피교육을 명함
	"	김예영	"
	"	이정희	"
	"	임수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원정숙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석	"
	"	신한미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준보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풍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조정민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곽형섭	"
	"	김수정	"
	"	송병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세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장진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유현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이수정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남성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은진	"
	"	이미나	"
	"	이진영	"
	"	장진영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백경현	"
	"	윤미림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윤주	"
	"	이효두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상률	2025. 5. 26.부터 2025. 5. 27.까지 법관 연수교육(2025년도 성폭력 재판의 최신 쟁점) 피교육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경	"
	"	김정운	"
	"	김태환	"
	"	이명선	"
	"	정경희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손영언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오승이	"
	"	한동석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정현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
	"	홍영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병주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권경선	"
	"	김주관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경숙	"
	"	박동규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금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송현	"
	"	김종석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경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부장판사)	문주희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김정웅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수현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훈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2025. 5. 26.부터 2025. 5. 27.까지 법관 연수교육(2025년도 성폭력 재판의 최신 쟁점) 피교육을 명함
	"	이재혁	"
	"	정현경	"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은혜	"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지희	"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달기	"
라.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호열	2025. 5. 26.부터 2025. 5. 27.까지 법관 연수교육(2025년도 성폭력 재판의 최신 쟁점) 피교육을 명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민아	"
	"	김수양	"
	수원고등법원 판사	고석범	"
	"	차선영	"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동일	2025. 5. 26.부터 2025. 5. 27.까지 법관 연수교육(2025년도 성폭력 재판의 최신 쟁점) 피교육을 명함
	"	김헌구	"
	"	윤이환	"
	"	이창환	"
	"	이환기	"
	"	정서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봉남	2025. 5. 26.부터 2025. 5. 27.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성폭력 재판의 최신 쟁점) 피교육을 명함
	"	김혜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성은	"
	"	오정훈	"
	"	정성화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유경	"
	"	장원정	"
	"	최정윤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지현	"
	"	김기민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병인	"
	"	김준영	"
	"	송현섭	"
	"	이대관	"
	"	이영은	"
	"	이호태	"
	"	최보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해마루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혜인	"
	"	하다희	"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동관	"
	"	유현주	"
	"	전화정	"
	"	정현재	"
	"	정희영	"
	수원가정법원 판사	편병호	"
	수원회생법원 판사	이원식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손주완	2025. 5. 26.부터 2025. 5. 27.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성폭력 재판의 최신 쟁점) 피교육을 명함
	"	이순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준석	"
	"	최미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
	"	이고은	"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정준	"
	대전지방법원 판사	강수민	"
	"	이호영	"
	"	전보람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송인석	"
	대구지방법원 판사	윤규원	"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 래	"
	"	이진아	"
	"	최지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은수	"
	"	신승아	"
	"	정수호	"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창건	"
	"	이충원	"
	창원지방법원 판사	안은지	"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지은	"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김준희	"
	"	오서진	"
	전주지방법원 판사	정인수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은지	2025. 5. 26.부터 2025. 5. 27.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성폭력 재판의 최신 쟁점) 피교육을 명함
	"	김혜린	"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승욱	"
	"	이황선	"
	"	최석준	"

끝.

》 인사발령 법 제90호 | 2025. 5. 22.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미경	2025. 5. 29.부터 2025. 5. 3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지식재산권 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현	"
	"	이규영	"
	"	이현석	"
	"	장창국	"
	"	조희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진현섭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윤선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용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남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송병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박태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세현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효두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세영	2025. 5. 29.부터 2025. 5. 3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지식재산권 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정승연	"
	"	정희엽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광남	2025. 5. 29.부터 2025. 5. 3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지식재산권 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	김대현	"
"	송혜정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원철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상	"
"	이태웅	"
특허법원 판사	김기수	"
"	김영기	"
"	김재령	"
"	박은희	"
"	우성엽	"
"	이혜진	"
"	정택수	"

다. 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권원명	2025. 5. 29.부터 2025. 5. 3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지식재산권 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	윤재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특허법원 판사	윤정운	2025. 5. 29.부터 2025. 5. 3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지식재산권 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	임현화	"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은영	2025. 5. 29.부터 2025. 5. 3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지식재산권 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	김지영 (金知泳)	"
	"	성재혁	"
	"	이경효	"
	"	정명진	"
	"	정요진	"
	"	정지백	"
	"	황일준	"
	"	황진영	"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연지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호선	"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소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자윤	"
			끝.

》 인사발령 법 제91호 | 2025. 5. 2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	2025. 6. 23.부터 2025. 7. 22.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2025. 6. 16.부터 2025. 7. 1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현	2025. 6. 25.부터 2025. 7. 2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박사랑	2025. 6. 9.부터 2025. 7. 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연	2025. 6. 2.부터 2025. 6.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김창현	2025. 6. 27.부터 2025. 7. 2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용석	2025. 6. 26.부터 2025. 7.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보성	2025. 6. 30.부터 2025. 7. 1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석재	2025. 6. 24.부터 2025. 7. 2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종화	2025. 6. 27.부터 2025. 7.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함종식	2025. 6. 23.부터 2025. 7. 1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신헌기	2025. 6. 30.부터 2025. 7. 2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재현	2025. 6. 2.부터 2025. 6.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2025. 6. 23.부터 2025. 7. 1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	-----	--

》인사발령 법 제92호 | 2025. 5. 26.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	-----	-----------------------------

(2025. 6. 19. 자)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광우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1.부터 2026. 1. 31.까지 휴직을 명함
"	윤남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19.부터 2026. 2. 20.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두희	"
"	윤명화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상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9.부터 2025. 12. 31.까지 휴직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태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9.부터 2026. 1. 9.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진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19.부터 2026. 6. 18.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조희성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19.부터 2025. 9. 18.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허 승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9.부터 2026. 2. 13.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범식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9.부터 2026. 2. 20.까지 휴직을 명함
	"	탁상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19.부터 2025. 8. 29.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9.부터 2026. 2. 20.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경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23.부터 2025. 12. 22.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진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1.부터 2025.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효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2.부터 2025. 11. 30.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아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3.부터 2026. 5. 2.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정윤	2025. 6. 3.부터 2025. 8. 2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수진	2025. 6. 6.부터 2026. 1. 3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3.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혜린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5. 6. 20.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20.부터 2025. 12. 23.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주원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5. 6. 30. 자)
	“	허인성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5. 6. 28. 자)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나현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5. 6. 1.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6. 1.부터 2026. 5. 31.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나승주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5. 6. 19. 자)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지애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5. 6. 9.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93호 | 2025. 5. 27.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이지은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2025. 6. 6. 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이지은	2025. 6. 9.부터 2025. 7. 18.까지 2024년도 임용 신임법관연수(3차) 피교육을 명함. 끝.

》 인사발령 법 제94호 | 2025. 5. 28.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정기승급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14호봉을 급함
	"	최지영	13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풍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김신유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지은	"
	"	윤이진	"
	"	홍은숙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강문희	"
	"	김병진	"
	"	서호원	"
	"	양우석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조정민	13호봉을 급함
	"	홍예연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하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은교	"
	"	노서영	"
	"	이성율	"
	"	장석준	"
	"	황운서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양우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강효인	"
	"	김세현	"
	"	신봄메	"
	"	정의정	"
	"	조윤정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진민희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신정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지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하선화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종환	"
	"	유승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효선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용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도정원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권기백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엄성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어준혁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진	13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금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연경	"
	"	김종석	"
	"	김춘화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임성철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영욱	"
	"	김희진	"
	"	배구민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재경	12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선말	11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조 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준현	13호봉을 급함
"	이혜란	"
"	이희준	"
"	최다은	"
"	황성미	"
대전고등법원 판사	장정태	"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유정우	"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진희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경선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건우	"
"	김나영	"
"	송유림	"
"	이봉락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영미	13호봉을 급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장지용	"
	수원고등법원 판사	차지원	"
	특허법원 판사	김기수	"

다.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강 건	13호봉을 급함
"	조혜수	"

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지웅	13호봉을 급함
"	김유진	"
"	이한상	"
"	김민주	10호봉을 급함

마.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옥영	9호봉을 급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지연	"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10호봉을 급함
"	정선희 (鄭善姬)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봉남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진영	"
대전가정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박태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노아	9호봉을 급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은영	9호봉을 급함
	"	김은오	"
	"	박선민	"
	"	신미진	"
	"	유혜주	"
	"	이소진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화	"
	"	김혜인	"
	"	장서진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유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남민영	"
	"	정은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기홍	"
	"	김성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아영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임한아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은솔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호선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민령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장민하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권가희	"
	부산지방법원 판사	엄지아	"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유경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김진오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구세희	"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현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허서윤	8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신애	"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병용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미영	7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배상혁	"
	"	전승환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학영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덕균	"
	인천지방법원 판사	안희경	"
	"	임선민	"
	대구지방법원 판사	안정현	"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지숙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지은	6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노해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진옥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대관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혜성	"
	춘천지방법원 판사	허소라	"
	대구지방법원 판사	최여진	"
	창원지방법원 판사	고유정	"
	"	홍진국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민희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하다희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지원	"
	수원지방법원 판사	류호정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수빈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이지혜	"

(2025. 6. 1.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95호 | 2025. 5.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현	2025. 6. 4.부터 2025. 6. 5.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감성과 명상의 연수 I) 피교육을 명함
	"	염기창	"
	"	정인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효연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주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장인혜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연선주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가현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윤준석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윤권원	2025. 6. 4.부터 2025. 6. 5.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감성과 명상의 연수 I) 피교육을 명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달기	"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수영	"
	"	한소영	"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형관	2025. 6. 4.부터 2025. 6. 5.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감성과 명상의 연수 I) 피교육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창우	2025. 6. 4.부터 2025. 6. 5.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감성과 명상의 연수 I) 피교육을 명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미영	"
	"	박혜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준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서민아	"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진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황은정	"
			끝.

》 인사발령 법 제96호 | 2025. 5.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준하	2025. 6. 9.부터 2025. 6.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신임법관연수 리마인드 세미나) 피교육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주영	"
	"	정영태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임성현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택현	"
	"	안희경	"
	"	이순공	"
	"	이지현	"
	"	진희원	"
	"	함덕훈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경하	"
	"	김선호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영미	2025. 6. 9.부터 2025. 6.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신임법관연수 리마인드 세미나) 피교육을 명함
	"	김현지	"
	"	이은비	"
	"	장 영	"
	"	조현준	"
	"	한정원	"
	"	홍미옥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재성	"
	"	유소영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한경우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김용찬	"
	창원지방법원 판사	곽리찬	"
	"	박준영	"
	"	홍대훈	"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변종두	"

끝.

》 인사발령 법 제97호 | 2025. 5.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회근	2025. 6. 9.부터 2025. 6.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광	2025. 6. 9.부터 2025. 6.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임수희	"
	"	한정석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우찬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준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진혜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남	"
	"	신순영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송병훈	"
	"	이재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지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혜림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장현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진영현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빈태욱	"
	"	신윤주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우경아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조아라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권경선	"
	"	김선아	"
	"	이진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재경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유철희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2025. 6. 9.부터 2025. 6.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의영	"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아	"
	특허법원 판사	이지영	"
라.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주일	2025. 6. 9.부터 2025. 6.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여동근	"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형관	2025. 6. 9.부터 2025. 6.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김민지 (金旻志)	"
	"	김은영	"
	"	이인화	"
	"	임효빈	"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서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권혁재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동균	"
	"	홍순건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정주희	"
	대구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재원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진경	"

끝.



2025. 06. 15. 제 1714 호
Supreme Court of Korea



9 772951 225009
ISSN 2951-2255